

## 01 법률칼럼

- 공정거래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하며(박형삼 변호사)

## 05 열려라 중국

- 중국의 심각한 주택 문제와 주택 규제 법규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 08 Vietnam LIVE!

- 베트남 기업법과 투자법의 개정 및 재정 내용  
(한승혁 호주변호사)

## 12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에서의 법인설립 및 운영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 17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Global 트렌드(중국)] 중국 통한 북한 경제특구 진출 노려라(최정식 변호사)
- [Global 트렌드(일본)] 외국 항공사, 싼 요금으로 시장 공략(김홍영 전문위원)
- [Global 트렌드(러시아)] 투자 발길 이어져...한국도 진출 서둘러야(이승민 러시아변호사)

## 19 주목! 이 판례

-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 21 최신법령

- 성년 연령의 하향 등
- 신용카드 인지납부가능 등
- 압류금지채권의 확장 등
- 저축은행 건전화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설치

## 24 업무동향

- '대신증권을 대리하여 대신증권그로스알파스팩의 합병 관련 법률자문 제공
- SK텔레콤을 대리하여 (주)나노엔텍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 '외톨이야' 표절분쟁에서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하여 승소

## 27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 강성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 최승수 변호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
- 명한석 변호사, '해외자원개발의 비밀주의와 정보 공개방안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발제

## 30 영입인사

- 이승기 변호사
- 박호경 변호사
- 최정민 변호사
- 강재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Newsletter는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적 효력을 지닌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법무법인 지평지성의 변호사 및 전문가와 상담하여 주십시오.



(법률칼럼)

## 공정거래법 시행 30주년을 맞이하여



박형삼 변호사

올해 2011년 4월 1일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이 시행된 지 30년이 되는 날입니다. 공정거래법의 제정이 최초로 추진된 시기는 1963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시멘트, 밀가루, 설탕을 생산하는 소수의 대기업들이 과점시장을 형성하고 담합을 통해 시장질서를 위협한 소위 '삼분사건(三粉事件)'이 발생하자 1964년 정부에서는 전문 29개조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초안을 작성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여러 차례 법률 제정의 시도가 있었지만 업계의 강력한 반발과 정부의 의지 부족 등으로 성사되지 못하다가 정치적 혼란시기였던 1980년 말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에 공정거래법률안이 상정되어 그 해 12월 23일 의결되었고, 12월 31일 공포되어 1981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1890년에 반트러스트 정책의 기본법이라 할 수 있는 셔먼법(Sherman Act)이 제정되었으니 벌써 12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 이웃 일본만 해도 『사적독점의 금지 및 공정거래의 확보에 관한 법률』을 1947년 제정하여 60년이 넘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의 30년 경쟁법 역사는 확실히 보잘 것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최근까지의 공정거래법 발전과 집행 성과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나름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 주도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른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심화와 민간경제 주체 간 불균형에 따른 변칙적인 거래행위의 만연 등 우리나라의 특유한 경제환경은 오히려 공정거래법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시민단체의 적극적인 감시활동과 법조계 및 학계의 지원, 경쟁당국의 법 집행의지와 경쟁정책의 국제적 조화 추진 등이 더해져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당초 경제기획원 소속기관으로 출범한 공정거래위원회는 1980년대까지 주로 불공정거래행위의 시정을 중심으로 제도를 운영하였습니다. 이후 사회 전반에 불어온 민주화 바람을 타고 독과점적 시장구조 특히 재벌의 경제력 집중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공정거래행위 사건 처리 위주에서 점차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에 관심을 보이게 되었고, IMF 외환위기를 겪으면서부터는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 개선과 투명경영에 적극 관여하는 정책을 추진하다가 최근 들어서 카르텔이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규제와 같이 경쟁정책 본연의 업무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습니다.

위와 같은 정책적 고려에 따라 그 동안 공정거래법은 여러 차례 개정을 거쳤는데, 주로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와 같은 경제력집중억제시책에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특히 IMF 위기 극복과정에서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1999년 지주회사의 설립을 제한적으로 허용하였고, 1987년부터 시행되었던 출자총액제한제도는 2009년의 법개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현재에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정부 및 의원발의 형식으로 여러 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 중에서 최근까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개정안은 지난 2009년 4월에 정부에서 제안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입니다. 위 개정안은 2010년 4월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를 통과하였지만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년 이상 발이 묶여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쟁점은 지주회사에 대한 규제의 완화인데 특히 일반 지주회사가 금융회사의 지분을 소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에 대해서 쉽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공정거래법에서는 일반 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가 금융업 또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국내 회사의 주식을 원칙적으로 소유할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주회사를 설립할 때 보유하고 있던 금융회사 지분은 2년 내에 처분해야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2년을 연장할 수 있으니 최장 4년 안에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따라서 올해 상반기에 법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2007년 7월에 지주회사로 된 SK는 올해 7월까지 SK증권 매각해야 하고, 2007년 9월에 지주회사로 된 CJ는 올해 9월까지 CJ창업투자사와 삼성생명 보유지분을 처분해야 합니다. 두산도 2009년 1월에 지주회사로 전환했기 때문에 2013년까지 두산캐피탈 지분을 매각해야 할 처지에 있습니다. 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야당은 이제 와서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보유를 허용할 경우 LG그룹과 같이 지주회사로 전환하면서 카드사와 증권사 등 금융자회사를 매각한 경우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고, 지주회사로 전환하고도 유예기간을 얻으면서 금융회사 지분을 매각하지 않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고 버텨온 특정 대기업에게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올 4월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안 처리의 윤곽이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들어 공정거래법 집행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행위 등 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사건 보다는 카르텔이나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과 같이 경쟁정책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2007년 말에 설립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사건과 가맹사업법 관련 사건의 일부를 처리하고 있지만 강제력 없는 조정의 역할만을 부여 받고 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대신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준사법기관으로서 사실상 1심의 역할을 맡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사건처리절차에 있어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전원회의 심의단계에서 참고인 대리인의 참여가 강제적으로 제한되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심의의 공개와 참여 문제에 대해 논란이 일기도 하였습니다. 실체법의 적정한 집행 못지 않게 피심인이나 이해관계인의 절차적 권리가 보장되지 않을 경우 준사법기관으로서의 공정거래위원회 결정에 대하여 신뢰를 보장 받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현행법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모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됩니다. 그 중 3인은 상임위원이고 나머지 4인은 비상임위원으로서 대통령이 전부 임명합니다. 또한 비상임위원의 경우 주로 법조인이나 학계의 전문가들이 겸직 형태로 임명되고 있어 점점 복잡 다난해지는 공정거래사건의 심리에 전념할 수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의 임명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거나 비상임위원제도를 폐지하고 전원을 상임위원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권택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는 금융위원회나 방송통신위원회 같은 여타의 합의제 행정기관과 마찬가지로 비상임위원 4명을 국회와 경제단체 등 외부의 추천을 통해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비상임위원의 추천권한 분산을 통해 공정성과 독립성을 보다 강화하자는 취지일 것입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30년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 및 정치발전과 국제적 위상 강화의 역사와 그 궤를 같이 하였습니다.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미국이나 EU의 경쟁당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국제적 공조를 같이 하고, 경쟁법 집행의 경험과 노하우를 후발 경쟁당국과 함께 나눌 수 있을 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부족한 인력과 예산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력을 보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준 공정거래위원회, 실무적 경험과 이론적 지원을 계속해온 법조 및 경제학계, 그리고 경제적 약자의 권익보장과 조화로운 시장질서에 관한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준 시민단체를 포함한 모든 국민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경쟁정책과 그 집행의 발전속도는 더욱 더 가속될 것으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공정거래법 시행 30주년을 다시 한번 축하하며, 자유로우면서도 공정한 시장질서가 공고히 정착되어 그 혜택을 우리 모두가 받아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퀴즈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후 2010년 말까지 사업자에게 부과된 과징금 총액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3조 826억 원입니다. 그러면 단일기업 기준 최다 과징금 부과액은 얼마일까요? 지난 2009년말 시장지배적지위남용으로 쉐콤에게 부과된 2,731억 원입니다. 현재 위 쉐콤 사건은 저희 법무법인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대리하여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열려라 중국)

## 중국의 심각한 주택 문제와 주택 규제 법규



최정식 변호사 · 상해 사무소장

### 1. 서론

원자바오 총리는 지난 2월 28일 중국 정부가 향후 보장방(保障房)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구체적 목표치로 금년에는 1,000만호를 건설하고 향후 5년 내에 3,600만호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보장방이란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을 뜻합니다. 중국의 주택문제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심각할대로 심각하여 어디서부터 손을 봐야 할지 막막한 실정입니다. 주택 문제의 심각성은 주택가격의 상승이 실질임금 상승을 압도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중국의 대도시 근로자가 근로하여 벌어들인 소득으로는 두 식구가 두 다리 뺀고 잘 소형 주택을 마련하기 어렵다는 데 있습니다. 이제 중국의 주택문제는 사회문제의 핫이슈로 자리 잡고 있지만 언제든지 정치문제로 비화할 것만 같습니다.

중국 정부가 보장방의 확대 정책을 내세우자 중국의 젊은 층은 일말의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1일 자 <중국청년보> 기사에 따르면, 중국의 젊은층은 보장방을 확대할 것,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할 것, 토지양도에 따른 지방정부의 재정의존도를 낮출 것 등을 제안하였다고 합니다.

### 2. 중국의 주택제도 변천

#### 가. 개혁 개방 이전의 주택 제도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중국 정부는 농촌 지역의 토지 소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봉건적 토지소유제를 해체하고 지주로부터 토지를 유상 또는 무상으로 몰수하여 실제 경작하는 농민에게 토지를 재분배하였습니다. 물론 농민들의 토지소유는 사유제가 아닌 공유제였는데 그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하는 형태를 취하였습니다. 주택문제는 신중국 건설 초기에는 현안에서 조금 빚겨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사회주의 건설의 1세대는 주택은 공공재로서 근본적으로 국가가 해결할 대상으로 이해하였습니다. 당시 주택제도를 소개하면, 대부분의 도시 지역 주택은 지방정부 또는 국영기업이 직접 관리하고 노동자와 기관 직원에게 무상으로 주택을 공급하였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임대료는 사실상 유지관리비에도 미치지 않은 저렴한 가격을 유지하였다고 합니다.

## 나. 개혁 개방 이후의 주택제도

개혁 개방 이후 중국은 거대한 변화를 보였습니다. 전통적 사회주의 제도의 골간을 흔드는 정책이 시행되어 그동안 국가가 주도한 사회보장제도는 이제 개인이 해결할 과제로 전락하였습니다. 특히 주택, 고용, 의료 영역은 이제 더 이상 국가가 보장할 대상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개혁 개방 초기 중국 정부가 주택문제를 개인에게 떠넘길 때 중국 내에서는 반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는 사회주의 이념의 포기라고 반대하는 세력도 존재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반대를 무릅쓰고 중국정부가 주택 문제를 국가 보장의 영역에서 사적 영역으로 밀어 넣은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지 보다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증가하는 주택수요를 주택공급이 감당하지 못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이며, 특히 주택 건설을 위한 재원이 중국 정부에게 크게 부족하였다는 것은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당시 주택제도의 개혁을 논의한 중국 국무원의 '도시주택건설공작회의'(1978년 9월)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건축이나 개인과 단위의 공동건축을 허용하고, 할부상환방법 등을 통해 개인의 수중에 있는 자금을 동원하면서 국가가 자재를 지원해 주는 등 통로를 다양화해야 한다"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고 합니다. 이로써 주택의 상품화가 실현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중국 정부는 저소득층을 위한 염가방(廉價房) 공급, 주택금융을 위한 주택공적금 제도 도입 등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택 문제가 사적 영역으로 전환되자 부동산 소유에 대한 불평등이 심각하게 제기되었습니다. 중국에서 주택은 투기의 대상이 되었고 무주택자는 앙등하는 부동산가격을 낮

고 바라보기만 하였습니다. 중국 정부가 해결책으로 내세운 다양한 제도와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재정수입이 부족한 지방정부가 토지분양에서 막대한 수익을 얻었기 때문에 주택규제에 소극적이었습니다.

### 3. 심각한 주택 문제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규제 법규

중국정부가 심각한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는 보장방을 확대하여 저소득층에게 혜택이 미칠 수 있도록 하고 유통 측면에서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한 양도세 증액과 부동산보유세인 방산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속칭 국팔조(國八條)라 불리는 [부동산 시장을 더한층 조절하는 업무에 관한 문제에 관한 국무원 반공청 통지]에는 중국 정부가 부동산제도 개혁에 대해 고민한 노력이 엿보입니다. 국팔조 등에서 언급한 주택 제도 개혁을 요약하면, 구입 후 5년 내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세를 전액 부가하고, 부동산 개발시 주변 부동산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분양하는 경우 토지증치세를 부과하고, 2 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부동산세를 부과하고 주택구입시 대출한도와 대출이자를 제한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 4. 맺은말

중국의 주택문제는 한국인에게 결코 낯설지 않습니다. 지난 노태우 정부 시기의 200만호 주택건설이 연상되고, 다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와 부동산보유세의 중과가 오버랩됩니다. 어느 국가에서나 주택문제는 경제문제이자 동시에 정치문제가기 때문에 선불리 손대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다만 주택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경험한 우리로서는 중국 정부가 애써 노력할지라도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다는 예감이 듭니다. 특히 보장방 공급과 주택세제 개혁이 중국의 건설경기 둔화로 이어질 때 가장 크게 타격을 입는 곳은 다름 아니라 토지 분양을 통해 막대한 재정수입을 취했던 중국의 지방정부라는 예측이 널리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Jipyong & Jisung



(Vietnam LIVE!)

## 베트남 기업법과 투자법의 개정 및 재정 내용



한승혁 호주변호사

베트남의 2007년 1월 WTO가입을 위한 법률개선 작업의 일환으로 마련된 기업법과 투자법은 외국기업의 대 베트남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법률입니다.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자의 요구와 베트남의 경제 상황을 고려한 법 개정과 하위 법령의 재정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으며, 아래는 그 중 많은 한국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정 및 재정 내용을 다룬 필자의 지난 2011년 3월 24일 호치민 상공인연합회 포럼 강의 내용의 일부입니다. 그 중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사항은 파란색으로 표시하였습니다.

### 1. 회사 일반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Law on Enterprises(제정: 2005/11/29; 발효: 2006/7/1)[Law 38(제정 및 발효: 2009/ 6/19)로 개정됨]	구 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은 2006/7/1로 부터 5년 내에 재등록 (최초 2년에서 5년으로 연장)
Decree 88(2006/8/29) [Decree 43(2010/4/15)으로 대체됨]	신설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베트남 회사 정보의 "전국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규정</li><li>• 사업 등록 기한 5일로 단축(기존: 10일)</li><li>• 전국에 동일한 사명 등록 불가(기존: 같은 지방에 동일한)</li></ul>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p>사명 등록 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베트남 회사에 한해 적용)</li> <li>• 새로운 자본 투자자의 등록 위해 자본 투자 완료에 대한 입증서류 필요</li> </ul>
Decree 139 of Government(2007/5/9) [Decree 102 of Government(2010/10/1)로 대체됨]	<p>신설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자는 LLC의 경우 members' council 의장을 상대로, JSC의 경우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 제기 가능</li> <li>• 투자 기한: 3년</li> <li>• 지적재산 현물 출자 가능(재무부의 가치평가 규정에 따름)</li> </ul>
Circular 03 of MPI (2006/10/19)[Circular 14 of MPI(2010/6/4)로 개정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Decree 43에 따른 사업 등록 신청을 위한 서류 제공</li> </ul>

## 2. 투자사업 등록,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

### - 투자사업 등록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Decree 101 of Government(2006/9/21)(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li> <li>• 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경우 투자법, 기업법 모두 적용</li> <li>• Law on Enterprises발효 이전에 설립된 외국인투자기업의 재등록에 관한 규정</li> </ul>
Decree 108 of Government (2006/9/22)(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상세 규정</li> </ul>
Decision 1088 of MPI (2006/10/19)(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투자법의 시행에 관한 상세 규정</li> </ul>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외국인투자기업 재등록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Decree 101 of Government (2006/9/21)(미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투자 사업의 등록에 관한 규정</li> <li>외국인투자기업 설립의 경우 투자법, 기업법 모두 적용</li> </ul>

### 3. BTO/BOT/BT 사업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Decree 78 of Government(2007/11/5) [Decree 108 of Government(2009/11/27)로 대체됨]	<p>BOT, BT, BTO 사업에 관한 신설 규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출자자본 총액이 VND 1조 5000억(약 USD70m) 이하인 사업의 경우 최소 지분투자는 출자자본 총액의 15%(기존: 20%)</li> <li>출자자본 총액이 VND 1조 5000억을 초과하는 사업의 경우 최소 지분투자는 출자자본 총액의 15% + VND 1조 5000억 초과분의 10%(기존: 10%)</li> <li>정부 제안 사업과 투자자 제안 사업 두 가지를 모두 다룸</li> <li>투자자 제안 사업은 공표되어야 하고 다른 투자자들이 동 사업에 관심을 표명할 경우 입찰 절차 거쳐야 함(기존: 승인된 투자자 제안 사업의 경우 투자를 제안한 자와 별도 입찰 절차 없이 협의 가능)</li> <li>BOT, BTO, BT 사업 당사자들은 국제 분쟁해결 방법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음(기존: 외국의 법원 또는 국제 중재와 같은 외국 분쟁해결 기관을 당사자들의 합의로 정할 수 있음). 국제 중재는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나, 외국 법원에서의 분쟁해결은 불가</li> </ul>

## 4. 외국인의 베트남 현지 기업의 지분/주식 인수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Decree 01 of Government(2010/1/4)(미 개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JSC는 비상장, 상장 회사 모두 가능</li> <li>상장 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외국인투자자는 증권 관련 규정(공모 규정 포함)을 준수해야 함. 외국인은 상장 회사 지분을 최대 49%까지 보유 가능</li> <li>외국인투자자는 사모(by institutional investors; or less than 100 non-institutional investors)로 비상장 회사의 주식 인수 가능. 외국인의 비상장 회사 보유 가능 지분율은 해당 JSC의 사업 부문 별로 다름</li> <li>사모는 해당 기관에 등록되어야 함. 비상장 회사의 주식 양도는 사모 규정 및 investment certificate 또는 business registration certificate의 개정 규정에 따라야 함</li> </ul>
Decision 36 of PM(2003/3/11)[Decision 88 of Government(2009/6/18)로 대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모든 종류의 베트남 회사에 적용됨. JSC, LLC, 파트너쉽, 사기업, 국유기업 및 베트남 법인(베트남 자본, 외국인 자본 불문)에 적용됨(기존: 100% 베트남 자본으로 설립된 회사에 한하여 적용됨)</li> <li>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외국인은 베트남 기업의 지분 또는 주식의 100% 보유 가능(기존: 최대 30%까지 보유 가능)</li> </ul>

## 5. 과실 송금

관련 법률	주요 내용 및 개정 사항
Circular 124 of MOF(2004/12/23) [Circular 186 of MOF(2010/11/18)로 대체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세금 납부 후 과실 송금 가능</li> <li>법인 해산 및 청산에 의한 과실 송금을 제외하고, 연 단위로 과실 송금 가능(기존: 법인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분기 단위로 '잠정' 과실 송금 가능하고, 잠정 과실 송금액이 회계연도 말 계산한 실제 이익의 금액 보다 높을 경우 그 차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반영)</li> <li>과실 송금 7일 전 세무관청에 통보(기존: 과실 송금 전 법인소득세 납부확인서 제출)</li> <li>현금 또는 현물 과실 송금 가능(기존: 현금 과실 송금만 가능)</li> </ul>

Jipyong & Jisung

(¡Hola! 중남미)

## 브라질 현지에서의 법인설립 및 운영



강아론 브라질변호사

### 1. 들어가면서

외국기업들이 브라질에 진출할 때 지사 설립방식보다는 현지법인 설립방식이 유리하고, 현지법인 설립방식 중에서도 유한책임회사(Sociedade Limitada: LTDA) 또는 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S.A.) 설립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점은 지난 [2011년 2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소개한바 있습니다. 또한 유한책임회사(LTDA.)가 절차 및 운영상의 측면에서 주식회사(S.A.)보다 간소한 반면, 자금 조달의 방식이 주식회사(S.A.)보다 제한적이고, 인적회사의 특성상 지분 양도시 정관의 개정을 요하므로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 중 어느 한 쪽이 반드시 유리한 법인형태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점은 지난 [2011년 3월 뉴스레터](#)를 통하여 소개한바 있습니다.

이하에서는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 각 법인형태의 설립 절차와 운영상 특이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주식회사는 비상장주식회사(Sociedade Anônima Fechada)에 한정하여 논의하기로 합니다.

### 2.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설립절차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A. 유한책임회사(LTD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우선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주 상업등기소(Junta Comercial do Estado)에 정관을 등기해야 합니다. 정관을 등기소에 제출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와 정관 외에 외국투자자의 주소, 목적사업, 자본금 및 임원 등이 기재된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설립증명서(Prova de existência legal, proof of legal existence)와 브라질거주자를 대리인으로 임명하는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외국어로 작성된 서류들은 상업등기소에 등록되어 있는 공인번역사의 번역을 받아야 유효합니다. 주식회사의 경우와 달리 유한회사의 경우에는 설립시에 반드시 자본금을 납입할 필요는 없고, 정관에 정해진 일정에 따라 설립 이후에 납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B. 주식회사 (S.A.)의 설립절차

유한책임회사(LTDA.)가 민법(Código Civil, 법률 제10,406호)의 규율을 받는 데에 반해, 주식회사(S.A.)는 주식회사법(Lei das Sociedades Anônimas, 법률 제6,404호)의 규율을 받습니다. 주식회사(S.A.)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2인 이상의 발기인이 설립총회(Assembléia de Fundação)를 통해 정관을 채택하고, 자본금의 10%를 현금으로 은행에 납입해야 합니다(현물출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설립시에는 10%의 현금납입이 필수임). 또한 모든 출자자들이 서명한 공증계약서(Escritura Pública) 또는 설립을 결의한 출자자총회 의사록을 정관과 함께 당해 관할 주 상업등기소에 등기해야 합니다.

## C. 공통적인 절차

유한책임회사(LTDA.)를 설립하든 주식회사(S.A.)를 설립하든 자본금을 납입하기 위해서는 송금 등록이 요구되는데, 송금 등록은 중앙은행 "SISBACEN"라는 전자 시스템에 회사 정보, 투자자 정보와 송금 금액 등을 등록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회사 설립은 정관 등을 당해 주 거래등기소에 등기함으로써 완성되지만, 회사가 합법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추가로 ① 연방 법인납세등록(Cadastro Nacional de Pessoa Jurídica), ② 주 법인납세등록(Inscrição Estadual), ③ 시 법인납세등록(Cadastro de Contribuintes Mobiliários)을 취득해야 하고, 영업허가 등을 위해서는 시청등록(Cadastro na Prefeitura Municipal)을 취득해야 합니다.

다. 또한 모든 건축물은 소방국의 안점검사(Vistoria do Corpo de Bombeiros)를 받아야 하고, 사회복지국 (Instituto Nacional de Seguridade Social) 등록, 고용인 조합(Sindicato Patronal) 등록 등의 절차도 별도로 거쳐야 합니다.

그 외에도 회사의 활동 분야에 따라 추가적으로 환경허가나 감독기관의 사전 허가가 요구되기도 합니다. 가령 제약회사는 국가위생감시기관(Agência Nacional de Vigilância Sanitária)의 허가가 요구되고, 건설회사는 지방건축위원회(Conselho Regional de Engenharia, Arquitetura e Agronomia)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3. 유한책임회사(LTDA.)와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 A. 유한책임회사(LTDA.)의 운영상 특이점

유한책임회사(LTDA.)는 인적회사로서의 특성상 직원들의 비공식적인 절차에 의해 회사가 운영될 수 있고, 주식회사에 비해 지배구조가 간단합니다. 유한책임회사(LTDA.)는 경영위원회와 이사회를 두지 않고, 직원총회(Assembléia dos Sócios)를 두게 되는데, 직원총회는 유한책임회사(LTDA.)의 최고 기관으로써 회사와 관련된 모든 사안들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직원총회 필수결의사항으로 업무집행자 선임 및 해임,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인수 및 합병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직원수가 10명 이하인 경우에는, 직원총회 대신 직원들의 간담회 (Reunião dos Sócios)를 통하여 결의하거나, 모든 직원들이 서명한 문서로 결의할 수 있습니다. 간담회 진행 방법이 정관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직원총회 규정이 적용되나, 간담회에 대한 규정을 정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는 임의기관으로서 회사의 재정상태와 업무집행자의 업무집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은 직원총회에서 선임되는데, 감사위원은 브라질 거주자이어야 하고, 최소 3인 이상이 선임되어야 합니다.
- 업무집행자 (Administrador)는 필수기관으로서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합니다. 회사규모에 따라 업무집행자를 1명 또는 그 이상 둘 수 있으며, 직원 중에서 선임하거나 외부 전문가 중에서 선임합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 사원총회 또는 경영위원회는 이들 기관 외에도 이사회 또는 회사 업무 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다른 기관들을 언제든지 만들 수 있습니다

## B. 주식회사(S.A.)의 운영상 특이점

주식회사(S.A.)의 기관으로는 주주총회 (Assembléia dos Acionistas), 경영위원회 (Conselho de Administração), 이사회 (Diretoria) 및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를 들 수 있습니다. 주주총회(Assembléia dos Acionistas)는 주식회사(S.A.)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정관변경, 이사 선임(경영위원회가 없을 경우), 감사위원회 선임, 사채 발행, 해산 결정 등을 필수결의사항으로 합니다.

- 경영위원회 (Conselho de Administração)는 임의기관으로서 주주로만 구성되며, 주주총회의 필수결의사항 외의 모든 사항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경영위원회는 사업 지침의 결정, 이사의 선임 및 해임, 주주총회의 소집, 이사의 활동 감시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법령상 경영위원회는 업무집행도 할 수 있으나, 경영위원회가 업무집행을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 이사회 (Diretoria)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기관이며 최소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됩니다. 일반적으로 경영위원회가 이사를 선임하지만, 경영위원회를 두지 않은 경우에는 주주총회가 이사를 선임하며, 브라질 거주자만이 이사로 선임될 수 있습니다. 이사는 내부적으로는 회사를 경영하고 외부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데, 정관에는 각 이사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고,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이사들이 공동으로 결의해야 한다는 취지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Conselho Fiscal)는 주주총회의 자문기관으로서 이사회 또는 경영위원회 구성원들의 경영업무를 감시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감사위원회는 필수기관이지만, 감사위원 선임 및 실제 활동은 필수사항이 아닙니다. 즉, 정관에 감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이 의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지만, 감사위원회 활동이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감사위원회 구성원들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최소 3명, 최대 5명의 감사위원으로 구성됩니다.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주주총회, 경영위원회,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중요한 지배구조 기관들로서 법률에 규정되어 있으나, 이들 기관 외에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별도 기관들이 구성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비상장주식회사에서 임의기관인 경영위원회는 상장주식회사에서는 필수기관입니다.

## 4. 맺으며

중소기업은 함께 사업을 추구할 직원들에 대한 신뢰감을 중시하는 인적회사를 선호하기 때문에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고, 대기업은 대규모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주식회사 형태의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브라질에 진출하려는 기업은 기업의 규모, 회사 운용방향, 위에서 살펴본 설립절차 및 운영상 특이점을 고려하여 법인 형태를 결정해야 할 것 입니다. [Jipyong & Jisung](#)

(한경비즈니스 기고문)

##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한경비즈니스 국제면 기고문)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는 2010년 9월부터 경제주간지 '한경비즈니스' 국제(Global) 면에 정기적으로 브라질, 중국, 러시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일본 등 한국기업 및 자본의 진출이 활발한 해외 각국의 주목할 만한 동향을 기고하고 있습니다. 기고되는 내용은 월간 지평지성 뉴스레터에 모아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 달의 기고]

한경BUSINESS

No. 798 | 2011. 3. 23.



[Global 트렌드]

중국에 종속되는 북한 경제

### 중국 통한 북한 경제특구 진출 노려라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서해 연평도 포격은 중국 대륙에도 큰 파장을 일으키며 많은 중국인에게 충격과 우려를 안겼다. 한국 정부의 천안함 사태에 대한 책임 규명이 국제사회에서 공감을 얻기 위한 충분한 논의를 거치지 못하고 중국 정부 당국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기 꺼리는 상황에서 북한의 연평도 포격은 중국의 젊은 지식층을 당황스럽게 만들었다. 연평도 포격이 한국과 북한 간의 긴장 국면으로 발전하고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

최정식 변호사

jschoi@jipyong.com

[PDF](#) [e-Link](#)



[Global 트렌드]

일본의 저가 항공 시장

### 외국 항공사, 싼 요금으로 시장 공략

일본의 대지진과 쓰나미 참화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대지진에 비할 바는 아니지만 이에 앞서 지난 2월 25일에 항공 업계를 술렁이게 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고의 황금 노선 중 하나인 인천~나리타 노선의 주 7회 신규 운수권이 저가 항공사(LCC : Low Cost Carrier)인 이스타에 배분됐고 부산~나리타 노선의 신규 운수권 역시 에어부산에 돌아갔다. 저가 항공사들은 기존 항공사 요금의 70~80% 가격으로 이르면 5월 초부터 운항에 들어간다...

[PDF](#) [e-Link](#)

김홍영 전문위원

hykimu@jipyong.com



[Global 트렌드]

러시아 곡물 시장

### 투자 발길 이어져.. 한국도 진출 서둘러야

최근 기상이변으로 곡물 작황이 부진한데다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 우려로 곡물 가격이 자극받고 있다. 올해도 작황부진을 이유로 러시아를 포함한 주요 곡물 수출국들이 수출 제한 조치를 연장할 의사를 보여 국제 시장에서 곡물 가격이 꾸준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유엔 식량 농업기구(FAO)는 전 세계 곡물 재고율이 2009~2010년 22.2%에서 2010~2011년 19%로 떨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시카고상품거래소 (CBOT)에서 3월 16일 부셸(27.2kg)당...

[PDF](#) [e-Link](#)

이승민 러시아변호사

smlee@jipyong.com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소개]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홈페이지)
- 법무법인 지평지성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소개 (PDF) [Jipyong & Jisung](#)

(주목! 이 판례)

## 보험료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 1. 판결의 취지

보험계약이 무효인 경우, 각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각 보험료 납부시이다.

### 2. 사실관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상법 제731조 제1항). 위 상법 규정은 강행법규로서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으면 무효가 됩니다(대법원 2006.6.29. 선고 2005다11602,11619 판결).

원고는 보험회사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피보험자의 서면동의를 받지 않아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회사를 상대로 그동안 원고가 납입한 보험료를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본 사안에서는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이 각 보험료 납입일로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부터 진행되는 것인지 쟁점이 되었습니다.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상법 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3. 판결의 요지

상법은 보험료반환청구권에 대해 2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는 취지를 규정할 뿐(제662조) 그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는 아무것도 규정하지 아니하므로, 그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상법 제731조 제1항을 위반하여 무효인 보험계약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보험료를 납부한 때에 발생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위 보험료 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볼 것이다.

## 4. 판결의 의의

원심에서는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해 생기는 보험료 반환청구권은 매일 보험료 납입시마다 개별적으로 생기는 권리가 아니라 보험계약에 의해 납부한 보험료 반환청구권 전체가 하나의 청구권"이라고 하면서, 개별적 보험료 지급시마다가 아니라 마지막 보험료를 납입한 때 납부한 보험료 전체에 대한 반환청구권이 발생해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하여 아무것도 규정하지 않은 경우 그 소멸시효는 민법 일반 법리에 따라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고 보아, 각 보험료를 납부한 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 판시에 따르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하여 2년(소멸시효 기간)전에 납입한 보험료는 시효소멸하게 됩니다.

참고로 만약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모집인이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에 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피보험자 대신 피보험자 자필 서명란에 서명하게 함으로써 생명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보험계약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대법원 2004. 4. 23. 선고 2003다62125).

## 5. 다운로드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92612 보험료불입금반환](#) [Jipyong & Jisung]

## (최신법령)

### 1. 성년 연령의 하향 등

: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

1. 성년연령을 낮추는 세계적 추세 및 「공직선거법」과의 조화 등 사회·경제현실을 반영하여, 성년에 이르는 연령을 만 20세에서 만19세로 하향 조정하였습니다(제4조).
2. 종전의 금치산·한정치산제도는 획일적으로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었는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사회복지시스템인 성년후견·한정후견·특정후견제도를 도입하고, 기존의 금치산·한정치산 선고의 청구권자에 후견감독인과 지방자치단체장을 추가하는 등 후견을 내실화하였습니다(제9조, 제12조, 제14조의2).
3. 성년후견 중 한정후견의 경우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이거나 후견심판에서 달리 정한 것은 취소할 수 없도록 하고, 한정후견인의 동의사항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 이상은 확정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로 인정하며, 특정후견을 받는 사람의 대외적 법률행위에는 어떠한 법적 제약도 따르지 않도록 하였습니다(제10조, 제13조).
4. 후견을 받는 사람의 복리, 치료행위 및 주거의 자유에 관한 신상보호 규정을 도입함으로써 피후견인의 복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947조, 제947조의2).
5. 친족회를 폐지하고 그 대신 가정법원이 사안에 따라 후견감독인을 개별적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견인의 임무해태, 권한남용에 대한 실질적인 견제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제959조의5, 제959조의10).
6. 후견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신의 사무처리능력이 부족하게 될 상황에 대비하여 재산관리 및 신상보호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이 원하는 후견인에게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위탁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는 공정증서에 의하게 하고 그 효력발생시기를 가정법원의 임의후견감독인 선임시로 하는 등 피후견인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제959조의14내지 제959조의20).

7. 다운로드 : 「민법」 일부개정(법률 제10429호, 2013. 7. 1. 시행)

## 2. 신용카드 인지납부가능 등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401호, 2011. 9. 8. 시행)

1. 종래 민사소송절차 등 각종 소송절차에서 소장에 인지를 붙이거나 인지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었으나, 법 제1조 단서를 개정하여, 당사자의 납부편의를 위하여 인지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대법원 규칙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2. 다운로드 : 「민사소송 등 인지법」 일부개정(법률 제10401호, 2011. 9. 8. 시행)

## 3. 압류금지채권의 확장 등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제10539호, 2011. 7. 6. 시행)

1. 생명과 상해를 보장하는 보험의 보험금 및 채무자의 최소한의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금액을 압류금지채권에 포함시켰습니다(제246조 제1항 제7호 제8호).

2. 압류금지채권의 금원이 채무자의 계좌에 이체된 경우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제246조 제2항). 이에 따라 압류금지채권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다운로드 :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 제10539호, 2011. 7. 6. 시행)

## 4. 저축은행 건전화 지원을 위한 특별계정 설치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76호, 2011. 4. 1. 시행)

1. 부실이 발생한 저축은행의 건전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법 제24조의4가 신설되어 예금보험기금 내에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이 설치됩니다.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정부 출연금, 기존 권역별 계정에 납부하는 보험료 일부 등으로 충당되며, 위 특별계정의 사용 목적은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한정됩니다.
2.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은 저축은행 부실에 필요한 시일 등을 고려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운영, 유지되며, 예금보험공사는 매년 위 특별계정의 전년도 결산 결과 및 해당 연도 운용계획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고 특별계정관리백서를 발간해야 합니다.
3. 다운로드 :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 제10476호, 2011. 4. 1. 시행) [Jipyong & Jisung](#)



(업무동향)

## 대신증권 을 대리하여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합병 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국내 스팩(기업인수목적회사) 업계 최초로 합병에 성공한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의 합병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합병대상은 터치스크린 패널 제조기업인 (주)썬텔로, 이번 합병은 국내에 상장된 22개의 스팩 중 처음으로 비상장주식회사와 합병상장을 공시한 사례로서 그 동안 자본환원을 산정 및 비상장법인에 대한 상대가치 평가기준의 변동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스팩업계에 좋은 선례가 될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파이낸셜뉴스 - 대신증권 스팩, 업계최초 합병 성공 (2011. 3. 16.)
- 머니투데이 - 대신증권 스팩, 업계 첫 비상장사 합병 (2011. 3. 16.)
- 아시아투데이 - 대신증권그로쓰알파스팩, 업계최초 합병 성공 (2011. 3. 16.)

### [담당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신민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 SK텔레콤을 대리하여 (주)나노엔텍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법률자문 제공

지평지성은 SK텔레콤을 대리하여 (주)나노엔텍 신주 및 전환사채 인수 관련 법률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SK텔레콤은 2월 17일 생명공학 연구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전문제조회사인 코스닥 상장 업체 나노엔텍에 25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고 발표하고, 나노엔텍의 신주 9.29%FMF DIR 110억원에 인수하고 전환사채(CB)를 140억원에 인수하였습니다.

나노엔텍은 생명공학 연구기기 및 체외진단기기 전문제조회사로 나노바이오 융복합 기술, 랩온어칩(Lab-On-A-Chip) 기술을 기반으로 생명공학과 진단 의료기기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머니투데이 - SKT, 바이오회사 나노엔텍 250억 투자 (2011. 2. 17.)
- 파이낸셜뉴스 - SK텔, 생명공학업체 나노엔텍에 250억 투자 (2011. 2. 17.)
- 이투데이 - SKT, 나노엔텍에 250억 투자 (2011. 2. 17.)

### [담당변호사]



강성 대표변호사   강율리 변호사   신민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업무동향)

## '외톨이야' 표절분쟁에서 '외톨이야' 작곡가를 대리하여 승소

지평지성은 4월 13일, '와이낫'의 전모씨 등 4명이 "그룹 씨앤블루의 데뷔곡 '외톨이야'가 와이낫의 노래 '파랑새'를 표절했다"며 작곡가 김도훈·이상호씨를 상대로 5000만원을 청구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외톨이야' 작곡가(김도훈·이상호)를 대리하여 승소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3단독 재판부는 "가락·화성·리듬 등을 비교할 때 두 곡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일부 비슷한 부분도 원고만의 창작적 표현이라기 보다 이미 다른 곡에도 쓰인 관용적인 모티브에 해당한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에서 배제되는 관용적 표현이 인정된 사례로 향후 유사 분쟁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할 주요 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 [관련기사]

- 동아일보 -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 씨앤블루 승소 (2011. 4. 14.)
- 조선일보 - '외톨이야', 되고송 표절 아냐 (2011. 4. 14.)
- 연합뉴스 - 법원 "씨앤블루 '외톨이야' 표절 아니다"(종합) (2011. 4. 14.)

### [담당변호사]



최승수 변호사    최정규 변호사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지평지성은 지난 4월 2일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을 다녀왔습니다.

작년 여름에 이어 다시 찾은 이번 관악산 정화활동에는 가족을 동반하여 모두 29명이 참여해서 각종 묵은 쓰레기와 담배꽂초들을 수거했습니다.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지평지성의 작은 손길들이 신록이 우거진 관악산을 더욱 푸르게 가꾸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관련링크]

- 관악구 자원봉사센터 - <http://www.gvc.go.kr>

### [관련사진]



법무법인 지평지성, 관악산 환경정화 봉사활동 (2011. 4. 2.)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강성 대표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

지평지성 강성 대표변호사가 대한변호사협회 소속의 국제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국제위원회 위원은 법률시장개방 대응과 국제회의 발표자 추천, 국제법률단체와의 교류 등에 관한 업무를 논의하게 되며, 20대 로펌에서 1명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 [관련링크]

- 대한변호사협회 - <http://www.koreanbar.or.kr> Jipyong & Jisung

## 최승수 변호사,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

지평지성 최승수 변호사는 지난 3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연예기획사 등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한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의 토론자로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기획사와 연예인 사이의 전속계약문제, 청소년연예인 인권 문제 등에 대한 개선방안이 논의되었습니다.

### [관련링크]

- 한국경제 - 대중문화예술산업 발전방안 토론회 (2011. 3. 25.)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단신)

## 명한석 변호사, '해외자원개발의 비밀주의와 정보공개방안 토론회'에서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 발제



(사진 : 법무법인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

지평지성 명한석 변호사는 지난 3월 23일 조승수 의원실에서 주최하는 '해외자원개발의 비밀주의와 정보공개방안 토론회'에 참석하여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하였습니다.

### [관련링크]

- 해외자원개발협회 - <http://www.emrd.or.kr> [Jipyong & Jisung]

(영입인사)



이승기 변호사  
sklee@jipyong.com

## □ 학력사항

- 세화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 수료(세법전공)

## □ 경력사항

- 제46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6기 수료
- 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이승기 변호사입니다.

사법연수원 제36기로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공익법무관으로서 3년간 법률구조공단에서 근무한 후 2011년 4월부터 지평지성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로펌에서 일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하며, 항상 어려웠던 시절을 생각하며 현재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박호경 변호사

hkpark@jipyong.com

## □ 학력사항

- 대구 경신고등학교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법학석사(행정법)

## □ 경력사항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서울고등검찰청 공익법무관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박호경 변호사입니다.

2008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후 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지평지성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기일회(一期一會), 지금의 만남은 생애 단 한번뿐인 인연'이라는 말을 고이 간직하며 법조인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지평지성을 통하여 세상과 만나고 더불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최정민 변호사

[jmchoi@jipyong.com](mailto:jmchoi@jipyong.com)

## □ 학력사항

- 민족사관고등학교 제2회 졸업
-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정책학과 석사과정

## □ 경력사항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법무부 공익법무관 (법무부장관 표창)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반갑습니다!

저는 2011년 4월 1일부터 지평지성에 입사하여 금융 파트에서 일하게 된 최정민 변호사입니다.

저는 사법연수원 수료 후 공익법무관으로 근무하는 동안 대한법률구조공단, 대전고등검찰청, 법무부 국가송무과 등지에서 각종 소송부터 법령 제·개정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평지성의 가족이 된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존경하는 선배 변호사님들께서 그동안 쌓아 올린 지평지성의 명성에 누가 되지 않도록 매사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변호사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고객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충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 법무법인 지평지성 뉴스레터

(영입인사)



강재영 변호사

[jykang2@jipyong.com](mailto:jykang2@jipyong.com)

## □ 학력사항

- 부산 성도고등학교 제20회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 경력사항

- 제47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7기 수료
- 공군법무관
- 현 법무법인 지평지성 변호사

## □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강재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2011년 제37기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공군법무관으로 3년의 복무를 마치고 4월부터 지평지성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훌륭하신 선배님들로부터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 있는 이 회사에서 일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Jipyong & Jisung



지평지성  
JIPYONG & JISUNG

<http://www.jipyong.com>

## 법무법인 지평지성

### 주사무소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1600 Fax : 02)6200-0800

### 순천 분사무소

(540-330) 전남 순천시 왕지동 870-1 금강타워 3층 Tel : 061)724-2001 Fax : 061)725-7604

###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100-743) 서울 중구 남대문로 4가 45 상공회의소빌딩 11층 Tel : 02)6200-0880 Fax : 02)6200-0804

### 상해 사무소

Room 2310, Shanghai Maxdo Center, No. 8 Xing Yi Road, Shanghai, China Tel : 86-21-5208-2800 Fax: 86-21-5208-2807

### 호치민 사무소

#1605, Centec Tower, 72-74 Nguyen Thi Minh Khai Street, Ward 6, District 3, Ho Chi Minh City, Vietnam Tel: 84-8-3910-7510 Fax: 84-8-3910-7511

### 하노이 사무소

Suite 1003, 10th Fl., Daeha Business Center, 360 Kim Ma St., Ba Dinh Dist., Hanoi, Vietnam Tel: 84-4-6266-1901 Fax: 84-4-6266-1903

### 캄보디아 사무소

SK-Shinah Office, 2F No.797, Monivong Blvd. & St. 484, Phsar Doeum Thkov, Khan Chamkarmon, Phnom Penh, Cambodia Tel : 855-23-726-897 Fax : 855-23-726-457

### 라오스 사무소

LLC Bldg, Nongbone Road, Saysetha District, Vientiane, Laos Tel : 856-20-2301-9820 Fax : 856-21-264-344